

별지

창원지방법원

제 21 민사부

의견청취서

사건 2013비합63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신청

신청인 주식회사 에스티엑스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, 담당변호사 김기영, 김선경, 이정환

법무법인 해인, 담당변호사 윤근수

사건본인 주식회사 에스티엑스

1. 이 법원은 위 사건본인에 대한 (주)STX 제8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

사채의 2013. 12. 20.자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비송사건절차법 제
113조 제2항, 제110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심리자료로 삼고
자 합니다.

2. 상법 제497조 제1항은 “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
못한다”고 규정하면서, 그 사유로 “①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
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, ②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
성립하게 된 때, ③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, ④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
익에 반하는 때”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3. 위 결의 불인가 사유에 관한 의견을 별지 <의견서>에 기재하여 2014. 1. 9.까지 서
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지

2013. 12. 30.

재판장 판사 고규정

참고 : 우편물을 보내실 곳(우편물을 보내실 때에는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(비송) 담당자 앞, 우편번호(642-705)

별지

의견서

1. 사건 : 창원지방법원 2013비합63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신청

2. 사건본인 : 주식회사 에스티엑스

3. 사채권자

성명(또는 상호) :

주민등록번호(또는 법인등록번호) :

4. 결의 불인가 사유의 존부

- 상법 제497조 제1항 제1호(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)
- 상법 제497조 제1항 제2호(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)
- 상법 제497조 제1항 제3호(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)
- 상법 제497조 제1항 제4호(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)
- 없다

5. 위 결의 불인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(별지 사용가능)

6. 기타 의견(별지 사용가능)

2014.

사채권자

(인)

주소 및 전화번호 :